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1283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소방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진선미의원 (2205919)	2024.11.2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5.02.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박정현의원 (2208415)	2025.02.25.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5.07.0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채현일의원 (2219047)	2026.05.22.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6.08.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강명구의원 (2220667)	2026.08.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6.03.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6.08.26.)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08.26.)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간부후보생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소방위 계급으로 임용되고 있으나, 1977년 「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사용되어 온 ‘소방간부후보생’이라는 명칭은 조직 내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있어 시대 흐름과 조직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이 ‘소방학교’라는 한정적 용어로 명시되어 교육훈련 대상·내용에 따른 명칭사용의 다양성·확장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시·도 단위로 분절된 인사 구조로 인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휘관이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승진 및 고위직 진출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간 인사교류와 균형 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간부후보생” 용어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함(제7조제1항 등).

나. 현행법의 ‘소방학교’ 용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교육훈련 대상으로 소방공무원 외에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함(제20조).

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 등을 위하여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5항).

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2.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간의 전보 및 파견
3.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제7조제1항 단서 중 ““소방간부후보생이라”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간부후보생의”를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

험”으로 한다.

제12조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해당 계급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주체,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속 소방공무원의”를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에”로, “교육훈련기관의”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로, “사

항과 제3항에”를 “사항 및 제4항에”로 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3.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1조의 제목 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소방간부후보생”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간부후보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임용권자) ① ~ ④ (생략) <신 설>	제6조(임용권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대통령 또는 소방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임한 임용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소방청 및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소방준감 또는 소방감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2.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소방청과 시·도 간 또는 시·도 상호 간의 전보 및 파견 3. 「소방기본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 배치된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전보 및 파견

⑤· ⑥ (생 략)	⑥·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제7조(신규채용) ① ----------.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은----------. ----------.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생략)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방준감 등 조직관리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하는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 주체,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 ① ----------한다.

<신 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되는 사람 3. 소방 관련 교육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소방 관련----------위하여----------.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1항에----------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사항 및 제4항에----------.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	제31조(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수 등) ----------

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에게는----------.